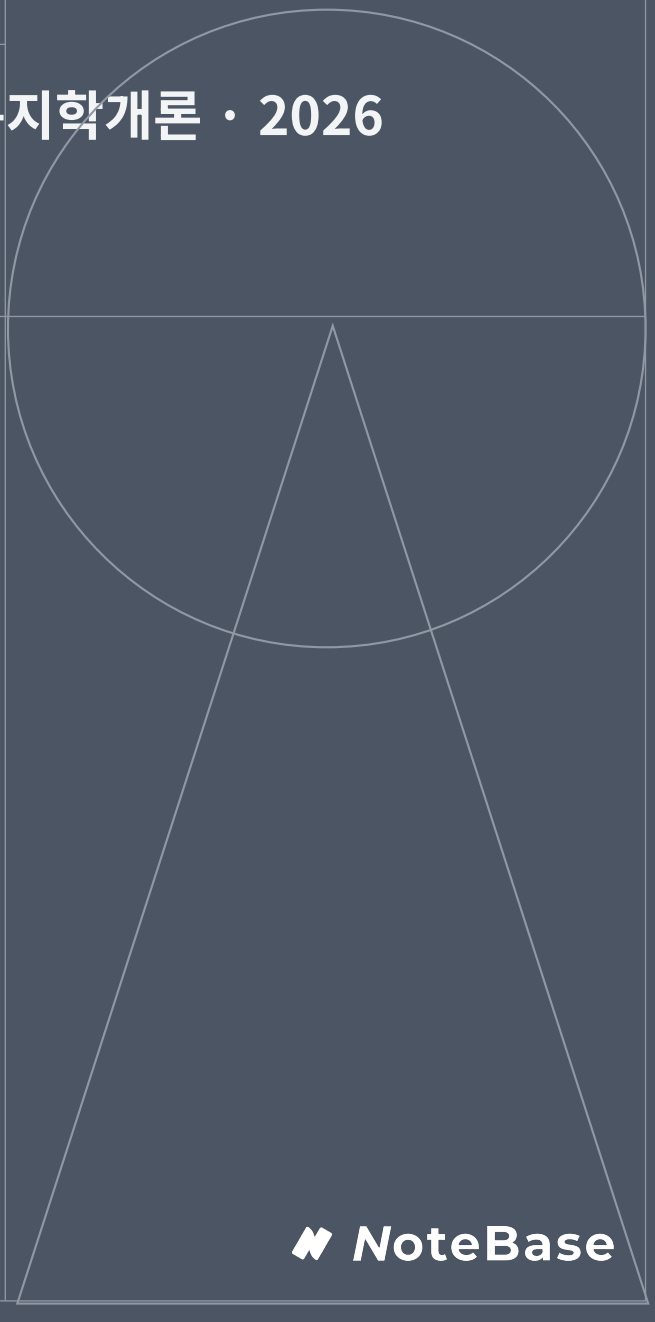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공무원/지방직/9급 · 사회복지학개론 · 2026**

**문 1. 매슬로우(Maslow)가 초기연구에서 제시한 5단계 욕구위계론 중 최상위 단계의 욕구는?**

① 생리적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자아실현의 욕구

④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자아실현의 욕구**는 매슬로우가 초기연구에서 제시한 5단계 욕구위계의 최상위에 놓인다.

**핵심 풀이**

매슬로우의 초기 5단계 욕구위계는 낮은 단계부터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순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최상위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려는 욕구이다. 먹고 자는 생리적 필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타인과의 소속과 애정을 추구하는 욕구보다 높은 단계에 놓인다. 타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는 존경의 욕구와도 구별된다.

NoteBase

**문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
④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정답 4번**

①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을 구성**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②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사회서비스와 함께 사회보장을 구성**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③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을 구성**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NoteBase

④

사회보장의 법정 범위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은 사적 보험으로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NoteBase

**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금액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소득
② 재산소득
③ 이전소득
④ 생계급여 소득

**정답 4번**

①

사업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합산하는 법정 소득 항목**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2. 사업소득

②

재산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합산하는 법정 소득 항목**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3. 재산소득

NoteBase

③

이전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에 합산하는 법정 소득 항목**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 질병 ·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4. 이전소득

④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산입하는 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5.4.20, 2015.12.31, 2016.6.21, 2018.9.18, 2019.10.15, 2020.12.22, 2021.6.29>
4. 이전소득[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NoteBase

**문 4. 인지발달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① 스키너(Skinner)

② 로저스(Rogers)

③ 에릭슨(Erikson)

④ 피아제(Piaget)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피아제는 아동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사고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그의 인지발달이론은 성장에 따른 **사고방식의 질적 변화**를 설명한다.

**개념 구분**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아동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며, 발달에 따라 **세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본다. 인지발달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한다. 따라서 인지발달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피아제이다.

에릭슨(Erikson)도 발달을 단계로 설명하지만, 중심 주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겪는 심리사회적 위기**이다. 사고 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5.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institutional conception of social welfa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은 요보호 대상자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③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④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주요 사회제도들과 기능적 중복 영역을 가짐과 동시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본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모든 사회구성원의 생활상 욕구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사회제도로 보므로, 수혜 대상을 **요보호 대상자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요보호 대상자에게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설명은 잔여적 관점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수혜 대상을 요보호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은 **잔여적 관점**의 설명이다.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보충적으로 개입한다고 본다. 제도적 관점에서는 생활상의 위험과 욕구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를 특정 취약집단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정상적인 제도로 본다.

② O: 제도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의 한계를 일시적인 고장이나 개인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현대사회의 구조적 한계**로 본다. 가족의 부양 능력이나 시장에서 얻는 소득만으로는 모든 구성원의 생활상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③ O: 사회복지는 질병·실업·노령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도적 관점은 이러한 지원을 예외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으로 본다.

④ O: 사회복지제도는 가족 등의 사회제도와 돌봄·생활지원의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므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영역과 독자적인 영역**을 함께 가진다. 가족도 돌봄을 제공하지만 사회복지는 조직적인 급여와 서비스를 통해 이를 수행하므로, 다른 제도의 실패를 잠시 메우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NoteBase

**문 6.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상화

② 시설화

③ 사회통합

④ 자립생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시설화는 장애인을 시설 중심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향하는 방향은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상화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생활 조건과 생활방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장애인 개인을 비장애인처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② X: 시설화는 장애인을 생활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을 뜻하며, 장애인복지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이 아니다. 이에 대응하는 이념은 **탈시설화**로,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주거·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③ O: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고용·문화 등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④ O: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모든 일을 타인의 도움 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활동지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데 핵심이 있다.

NoteBase

**문 7.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학생이 협회의 활동을 주도했다.

②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이 활약하였다.

③ 주도세력은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하였다.

④ 초기부터 빈곤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원**이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상태를 살피고 상담과 도덕적 지도를 제공하였다.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돕는 활동이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대학생과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빈민 지역에서 활동한 것은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다. 자선조직협회는 중산층 자선가와 자원봉사자 등을 중심으로 자선기관들의 구호 활동을 조정하고 빈곤 가정을 개별적으로 지원하였다.

② O: **우애방문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였다. 근면과 절약을 강조하는 도덕적 지도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자립을 돕고자 하였다.

③ X: 활동가가 빈민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과 생활을 함께한 것은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다.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원은 빈곤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방문을 통한 지원과 지역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④ X: 초기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주로 나태나 도덕적 결함 등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으며, 개인의 생활 태도 개선과 자립을 강조하였다. 열악한 주거·노동 조건 등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여 지역사회와 제도의 개선을 추구한 것은 인보관 운동의 특징이다.

NoteBase

**문 8. 사회복지실천과정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개입
(나) 사정
(다) 접수
(라) 계획
(마) 평가 및 종결

① (다) → (나) → (라) → (가) → (마)
② (다) → (라) → (나) → (가) → (마)
③ (라) → (다) → (나) → (가) → (마)
④ (라) → (다) → (가) → (나) → (마)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분석하는 **사정이 계획의 근거**가 된다. 사정 결과에 따라 목표와 방법을 정한 뒤 개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종결한다.

**올바른 순서**

(다) → (나) → (라) → (가) → (마)

(다) 접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주된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초기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 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사정에 앞선다.

(나) 사정: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강점, 주변 환경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판단하므로 계획의 근거가 된다.

(라) 계획: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 목표, 방법, 역할과 일정 등을 정한다. **해결할 문제와 목표를 구체화**해야 실제 개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가) 개입: 수립한 계획에 따라 상담, 자원 연결 등의 활동을 실행하여 문제 해결과 변화를 돕는다.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향해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단계이며, 그 결과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마) 평가 및 종결: 개입 결과를 목표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 정도와 개입의 효과**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관계의 종결을 준비하고, 클라이언트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NoteBase

**문 9. 서비스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트래킹(tracking)

② 크리밍(creaming)

③ 사례관리(case management)

④ 접수(intake) 창구의 단일화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크리밍**은 서비스 성과를 내기 쉬운 클라이언트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방안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하지만 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트래킹은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이 보유한 **클라이언트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이용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 기관 간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② X: 크리밍은 기관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클라이언트를 선별**하고, 지원이 어렵거나 성과를 내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방안에 해당하지 않으며, 욕구가 큰 사람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③ O: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사정·계획하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며 제공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개별 기관의 서비스가 따로 제공되는 파편성을 줄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이어지도록 한다.

④ O: 접수 창구의 단일화는 클라이언트가 기관마다 따로 찾아가 신청하는 대신 **하나의 창구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을 통합하여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NoteBase

**문 10.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는 모두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한다.

② 질적연구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고 양적연구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다.

③ 질적연구는 주관적인 관찰을 인정하고 양적연구는 객관적인 분석을 강조한다.

④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에 비하여 인간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 맥락에 관심을 둔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모두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연구는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질적연구는 **특정 맥락 속 경험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통계적 일반화는 표본에서 얻은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양적연구는 적절한 표집과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일반화를 추구할 수 있다. 질적연구는 참여자의 **경험과 의미를 맥락 속에서 깊이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므로, 두 연구가 모두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② O: 질적연구는 개별 사례의 관찰·면접 자료에서 공통된 주제나 개념을 찾아 설명을 형성하는 **귀납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 양적연구는 기존 이론에서 가설을 도출한 뒤 수집한 자료로 검증하는 **연역적 접근**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각 연구가 한 가지 추론 방식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질적연구는 참여자가 경험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에 관여함을 인정한다. 양적연구는 표준화된 측정과 명확한 분석 절차를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영향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질적연구가 주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근거 없이 임의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질적연구는 현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핀다. 따라서 수치화된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는 양적연구에 비해 **인간경험의 과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둔다.

NoteBase

**문 11. 조지(George)와 와일딩(Wilding)의 사회복지이념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집합주의는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②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③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주장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④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계급구조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복지국가의 적극적 옹호와 점진적 개혁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입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중시한다. 국가의 광범위한 개입은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기능을 제약한다고 보므로 **국가개입과 복지국가의 확대에 비판적**이다.

② O: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시장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업·빈곤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범위의 국가개입**과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국가개입을 자본주의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 이해한다.

③ X: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계급관계에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찾는다. 복지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을 일부 개선하더라도 계급갈등을 완화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표현은 **복지국가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로 고쳐야 한다. 국가가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적 복지국가를 적극 옹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O: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민주적 절차와 국가의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므로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자본주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개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의 관계를 가진다.

② 측정도구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④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나 개념의 모든 속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신뢰도가 높아도 측정값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타당도는 낮을 수 있으므로, 두 개념이 **항상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이고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대상을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이므로, 두 개념이 항상 함께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 체중보다 늘 5 kg 높게 표시하는 체중계는 반복 측정값이 일정하여 신뢰도는 높지만, 실제 체중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타당도는 낮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만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장할 수 없다**.

② O: 측정값이 일관되더라도 엉뚱한 개념을 측정하면 정확한 측정이라고 할 수 없고, 결과가 매번 크게 달라져도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정도구는 **일관성과 측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③ O: 신뢰도는 같은 대상을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를 얻는 정도**이다. 우연한 오차가 작아 측정값이 안정적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이는 측정값이 실제 대상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와는 구별된다.

④ O: 타당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구성이나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도**이다. 추상적인 개념을 문항이나 지표로 옮길 때 그 개념의 속성을 충실히 담아야 하며, 중요한 속성이 빠지거나 다른 개념을 측정하면 타당도가 낮아진다.

NoteBase

**문 13.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개인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③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요건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정답 1번**

①

1997년 개정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를 규정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11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③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2007. 8. 3. 일부개정) 제39조의2 제3항
노인복지법(2007. 8. 3. 일부개정) 제39조의2 (요양보호사의 직무 · 자격증의 교부 등)
③시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1997년 개정으로 시설 설치·운영 주체가 확대되어 **개인도 신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입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정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34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NoteBase

③

1997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의 감독이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43조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43조 (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1997년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34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전부개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NoteBase

**문 14.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하위체계는?**

① 생산하위체계
② 적응하위체계
③ 유지하위체계
④ 경계하위체계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를 연구·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직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응하위체계의 기능이다. 외부와 관계를 맺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찾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념 구분**

적응하위체계: 환경의 요구가 달라졌을 때 조직에 필요한 변화를 찾아내는 기능을 한다. 환경 변화와 조직의 업무수행능력을 연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과 계획을 제시한다. 따라서 발문의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과 '조직의 변화를 유도'는 **환경에 맞추어 조직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는 적응하위체계를 가리킨다.

경계하위체계와의 구분: 경계하위체계도 환경과 관련되지만, 외부 조직과의 교류·협력, 자원 확보, 지역사회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등 **조직과 외부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후원자원을 확보하는 활동은 경계하위체계에, 달라진 주민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활동은 적응하위체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성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타고난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② 상황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십은 과업의 성격, 구성원의 특성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③ 블레이크(Blake)와 머톤(Mouton)의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중도형(5.5형)의 리더십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④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에 따르면 집단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인 리더십 유형이 더 효과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관리격자 이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유형은 중도형(5.5형)이 아니라 **팀형(9.9형)**이다. 팀형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유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통적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가 일반인과 구별되는 **타고난 특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리더의 개인적 특성에서 리더십의 효과성을 설명하려는 접근이다.

② O: 상황이론은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진다**고 본다. 과업의 성격이나 구성원의 특성 등이 달라지면 적합한 리더십도 달라지므로, 모든 상황에 똑같이 효과적인 유형을 전제하지 않는다.

③ X: 블레이크와 머톤의 관리격자 이론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각각 1부터 9까지 구분한다. 이 이론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한 유형은 두 관심이 모두 높은 **팀형(9.9형)**이다. 중도형(5.5형)은 두 관심이 모두 중간 수준인 유형으로, 생산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과 타협을 추구한다.

④ O: 피들러의 상황적합이론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구조, 리더의 직위권력으로 상황의 호의성을 판단한다.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형**이 더 효과적이고, 호의성이 중간 수준일 때는 관계지향형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선지의 호의적·비호의적 상황은 호의성의 양극단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NoteBase

**문 16. 단일사례설계 중 ABAB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AB 설계보다 인과적 관계를 더 갖추게 된다.

②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③ 첫 번째 개입 전과 첫 번째 개입 중단 이후에 각각 기초선이 설정된다.

④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면 개입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변화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입의 인과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ABAB 설계에서는 **개입 중단 시 기초선 수준으로 돌아가고 재개입 시 다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때 인과관계의 근거가 강해진다.

**선지별 해설**

ABAB 설계는 기초선(A) → 개입(B) → 개입 중단 후 기초선(A) → 재개입(B)의 순서로 같은 사례의 행동을 반복 측정하는 설계이다. 기초선은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관찰한 행동 수준으로, 개입 단계의 변화와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① O: AB 설계는 개입 전후의 변화만 비교하므로, 같은 시기에 발생한 다른 사건이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BAB 설계는 **개입의 중단과 재도입에 따른 변화까지 반복 확인**하므로 일반적으로 AB 설계보다 인과관계를 더 강하게 뒷받침한다.

② O: 별도의 통제집단을 두지 않고, **동일 사례의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를 비교**한다. 기초선에서 관찰한 행동이 비교 기준이 되므로 대상 사례가 스스로 통제의 역할을 한다.

③ O: 첫 번째 A는 최초 개입 전의 기초선이고, 두 번째 A는 첫 번째 개입을 중단한 뒤의 기초선이다. 두 단계 모두 **개입이 없는 조건**에서 행동을 측정하며, 두 번째 기초선에서 행동이 처음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를 살핀다.

④ X: 첫 개입 후의 변화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유지되면, 개입이 없는 상태와 재개입 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개입 효과의 지속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과 구별하기 어려워, 그 사실만으로 인과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 ABAB 설계에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개입 중단 시 행동이 기초선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재개입 시 다시 변화하는 양상**이다.

NoteBase

**문 17. 방어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억압은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괴로운 경험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② 투사는 억압된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③ 반동형성은 불안을 야기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혹은 충동을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다.

④ 퇴행은 잠재적 외상이나 스트레스 등에 직면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단계나 행동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승화**이다. **투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억압은 받아들이기 힘든 충동이나 괴로운 경험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억제와 달리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X: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활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승화**이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충동을 인정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돌리는** 방어기제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상대를 미워하면서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기는 경우이다.

③ O: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충동과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나타내어 불안을 줄이는 방어기제이다. 내면의 적대감을 인정하기 어려워 겉으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 예이다.

④ O: 퇴행은 외상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전 발달단계의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방어기제이다.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어 과거의 더 의존적이고 미숙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NoteBase

**문 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된다.
ㄴ. 65세 미만인 자도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ㄷ.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3번**

**ㄱ**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다만 두 보험료는 구분하여 고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NoteBase

ㄴ

65세 미만이라도 **법정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신청자격과 장기요양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정과 등급판정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개정 2016.5.29>

NoteBase

ㄷ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다. 법정 면제·감경 대상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1>
③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1.12.21>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17, 2018.3.27, 2018.12.11, 2021.12.21>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 ·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 · 벽지 ·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2018.3.27, 2018.12.11, 2021.12.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본인부담금)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NoteBase

**문 19.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아동양육시설
ㄴ. 자립지원시설
ㄷ. 협동돌봄센터
ㄹ. 청소년쉼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3번**

**ㄱ**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과 취업훈련·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ㄴ**

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NoteBase

ㄷ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NoteBase

ㄹ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1.12.21, 2023.7.18, 2025.4.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 연극 · 영화 · 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 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NoteBas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 학교 ·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 주거 · 학업 ·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NoteBase

**문 2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 우선 제공대상인 지역주민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ㄷ.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ㄱ**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ㄴ**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중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NoteBase

ㄷ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중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제2항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NoteBase